



금융감독원

보 도 자 료



금융은 통통하게 소비자는



보도	2023.4.3.(월) 석간	배포	2023.3.31.(금)		
담당부서	기업공시국 기업공시총괄팀	책임자	팀 장	장 영 심	(02-3145-8475)
		담당자	선 임	윤 영 탁	(02-3145-8480)
	공시심사실 공시심사3팀	책임자	팀 장	신 용 제	(02-3145-8463)
		담당자	선 임	김 민 영	(02-3145-8465)

대용납입을 통한 사모 CB·BW 발행 관련 공시제도 개선

- ‘사모CB를 악용하는 자본시장 교란사범을 엄단하겠습니다.’
[‘23.1.20. 금감원 발표] 후속조치 -

주요 내용

- 상장기업이 비상장주식 등 실물자산 취득을 대가로 전환사채(CB)·신주인수권부사채(BW)를 발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.
 - ※ 회사가 CB·BW 발행대금을 현금이 아닌 실물자산으로 납입받는 것은 “대용납입”에 해당합니다.
 - 일반투자자가 실물자산 취득 등 대용납입을 통한 CB·BW 발행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.
- 금융감독원은 자산종류, 평가방법 등 대용납입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시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할 예정입니다.
 - 서식 개정으로 투자자는 대용납입 방식의 CB·BW에 내재한 투자위험을 충분히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.
- 금융감독원은 대용납입 자산의 평가 방법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는 등 투자자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.

I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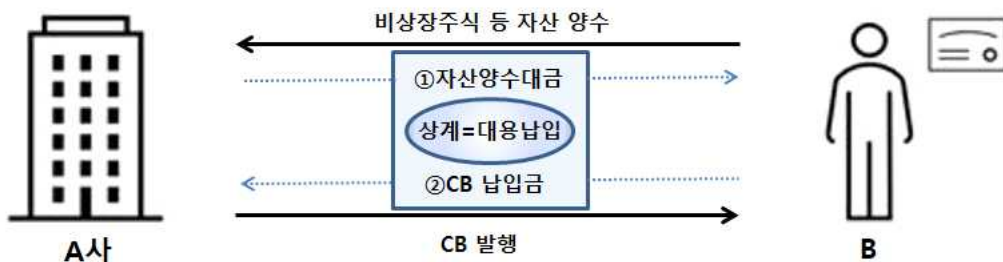
현황

- 최근 상장기업이 실물자산(비상장주식, 부동산, 무형자산 등)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CB나 BW를 발행하는 사례가 증가*

* 코스피·코스닥 기업의 대용납입 방식 CB·BW 발행(예정)액 : '19년 2,594억원 → '22년 1조 1,765억원(4년 동안 353.5% ↑)

CB · BW 발행대금 대용납입 거래 예시

- A사는 B로부터 비상장주식 양수계약 체결하면서 B에게 지급할 자산양수대금(매매대금채권)을 대신하여 CB를 발행해주고, B의 CB 납입금 채무와 상계



II

공시서식 개정 주요 내용 (☞ '23.4.7. 시행)

① CB·BW 대용납입 여부 및 납입자산 정보 공시강화

- (현황) '대용납입' 관련 내용을 주요사항보고서의 「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」에 기재하고 있으나,
- 대용납입 사실만 단순 기재하여 CB·BW 발행을 통해 취득한 자산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사례도 존재
- (개선방안) 대용납입 여부, 납입자산 상세내역 등을 별도 기재하도록 'CB·BW 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' 서식을 개정

【미흡 기재 사례】

• 본사채의 대금납입은 사채권자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채권액과 상계하여 납입하는 것으로 대체 하였습니다.

【개선 방안】

• 대용납입 여부, 납입자산의 종류 및 상세내역을 별도 항목으로 기재

☞ 대용납입 사실과 그 구체적인 내용을 쉽게 파악 가능

② 대용납입 자산의 가치 적정성 판단을 위한 정보제공 확대

- (현황) 대용납입받는 비상장주식, 유·무형자산 등의 가치가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는 경우가 거의 없음
 -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에도 'CB·BW 발행 주요사항보고서'에 해당 사실을 기재하지 않아 정보이용자가 '자산양수도 주요사항보고서'를 별도로 찾아봐야 하는 불편 존재
- (개선방안) 납입자산 평가방법을 기재하고, 납입자산이 비상장기업의 주식 등인 경우 해당 기업정보를 추가 기재

【공시 실태】

- CB·BW 발행 주요사항보고서에 대용납입자산의 가치가 적정한지 파악할 수 있는 정보 부재
- 자산양수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여 외부평가를 받았음에도 CB·BW 주요사항보고서에는 관련 사실 미기재

【개선 방안】

- 납입자산 평가방법*을 기재하되, 비상장기업 주식 및 CB·BW는 발행기업 개황, 최근 재무정보, 회사와 관계 및 거래내역 등을 추가기재하도록 주요사항보고서 서식 개정

* 외부평가의견서가 첨부된 '자산양수 주요사항보고서'를 제출한 경우 이를 참조 방식으로 기재

Ⅲ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

- 회사는 대용납입 과정에서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를 충실하게 기재할 것으로 기대되며,
- 투자자는 대용납입 방식의 CB·BW에 내재한 투자위험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하고 투자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음
- 금융감독원은 공시서식 개정 이후 대용납입 자산의 평가 방법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예정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

- (납입방법 기재) '전환사채권·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' 주요사항보고서에 납입방법을 필수기재사항으로 추가

* 납입방법이 전액 현금인 경우에만 '현금',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'기타'로 기재

< 현 행 >

전환사채 발행결정

1. 사채의 종류	회차	종류
2. ~ 11.		
12. 납입일		
13. ~ 21.		

< 개 정 >

전환사채 발행결정

1. 사채의 종류	회차	종류
2. ~ 11.		
12. 납입일		
13. 납입방법(신설)	현금 / 기타	
14. ~ 22.		

⇒

- (납입자산 세부정보 기재) 납입방법이 기타(대용납입)인 경우 주식·회사채·유형자산 등 납입자산의 상세내역, 평가방법 등을 기재
- 특히, 납입자산이 비상장회사의 주식 또는 주식관련사채인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정보를 추가적으로 기재

<CB-BW 발행결정>

- ▶ 납입방법이 "기타"인 경우 다음 표를 추가

납입자산	상세내역	평가방법

- ▶ 납입자산이 비상장회사의 주식 또는 주식관련사채인 경우 해당 회사 관련 다음 정보를 추가로 기재

1. 기본사항

업종	최대주주	대표이사

2. 주요사업의 내용

--

3. 최근 결산기 재무에 관한 사항

(단위 : 원)

자산총계	부채총계	자본총계	자본금	매출액	당기순이익

4. 납입경위, 거래내역 등

발행사 또는 발행사의 최대주주와의 관계	해당 비상장회사 주식 또는 주식관련사채로 납입하게 된 경위	전환사채권 발행결정 전후 6월 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

주) 자산양수도 주요사항보고서 등을 통해 납입자산에 대한 공시가 이루어진 경우 참조방식으로 같음